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04 발의연월일: 2021. 2. 1.

발 의 자:이성만·김교흥·맹성규

박찬대 • 배준영 • 서영교

송영길 · 신동근 · 양정숙

유동수・윤준병・이규민

이수진 • 정일영 • 허종식

황운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상인"이라 함)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이내로 할 수 있고, 일반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수의계약을 통한 경우는 10년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내용은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이 법 조항 시행 전에는 최초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만료 후,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입찰이 아닌 조례나 내부지침에 따라 기존 임차 상인과 수의계약을 체결·갱신하여 왔음.

이에 따라 이 법 조항 시행 이전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하

고 있는 상인의 경우 개정된 이 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지 아니면계약 당시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 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 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 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1항 중 "하는 자"를 "하는 자(법률 제1592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사업을 하고 있 는 자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유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・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「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 관계없이 제17조의2를 적용하되, 사용・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・수	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・수
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	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	①
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	
고자 <u>하는 자</u> 에 대하여 「공유	<u>하는 자(법률 제15922호</u>
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	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
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	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
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	당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
착물의 사용・수익허가기간 또	함한다)
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	
수 있다.	
	- 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